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37 발의연월일: 2020. 8. 31.

발 의 자: 박재호·전재수·최인호

김정호ㆍ허 영ㆍ한병도

김경협 • 박용진 • 정춘숙

이상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공항, 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 입점을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와 임대료 부담능력이 낮은 중소기업은 다중이용시설 입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할수 있는 시설·공간을 제공하도록 해당 다중이용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한 중소기업자에 대해 입점에 따른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소상공인과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3(중소기업의 다중이용시설 입점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은 공항·항만의 여객이용시설, 철도 역사(驛舍), 여객자동 차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시설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다중 이용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가 입점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대중의 이용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점에 따른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입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한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본사·주사무소·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제26조의3(중소기업의 다중이용 시설 입점에 대한 지원) ①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항·항 만의 여객이용시설, 철도 역사 (驛舍), 여객자동차터미널, 고속 도로 휴게시설 등 중소벤처기 업부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 설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하 여 중소기업자가 입점할 수 있 는 시설이나 공간의 제공을 요 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대중의 이용에 중 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 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대
	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입

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 시설 입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다중이 용시설과 동일한 관할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 는 특별자치도에 본사·주사무 소·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두 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를 우대하여야 한다.